

#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 본 정관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에 의한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명칭)** 이 법인의 명칭은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‘산학협력단’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**제3조 (사무소 소재지)**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서울신학대학교(이하 ‘본교’라 한다) 내에 둔다.

**제4조 (업무)** ① 산학협력단은 법과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의 정관, 본교의 학칙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산학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
2.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
3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
4. 본교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
5. 지적재산권·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6.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업무
7. 대학 내에 설치·운영되는 각종 산학협력 관련 기관이나 사업에 대한 관장 및 지원  
<신설 2014.01.07.>
8.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업무

**제4조의 2 (관련 기관의 업무 조정 등)**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속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관 또는 조직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.

① 부속기관: 청년사업단, 아동발달지원센터, 좋은꿈나무어린이학교, 논리창의성교육센터, 한국 카운셀링센터 등

②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조직

<본조신설 2014.01.07.>

## 제2장 조 직

**제5조 (이사)** 산학협력단에 이사 1인을 두며, 산학협력단장(이하 ‘단장’이라 한다)이 이사가 된다.

**제6조 (단장)** ① 산학협력단에는 본교 교수, 부교수, 참여에서 단장을 두며, 단장은 총

장이 임명한다.

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,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한다.

**제7조** (단장 유고시 직무대행)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8조** (감사) ① 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인을 둔다.

②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야 한다.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감사는 단장 또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.

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⑤ 감사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.

**제9조** (하부조직) ①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팀을 둔다.

② 팀에 팀장 1인을 두며, 팀장은 조교수이상, 부참사 이상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산학협력단에는 제1항의 하부조직 외에 산학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한 부속기관 및 센터를 따로 둘 수 있으며, 각 부속기관과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.

<개정 2014.01.07.>

**제10조** (행정사무) ①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,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내에 행정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행정부서에는 직원, 연구원,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인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 또는 겸직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파견 또는 겸직하는 자는 본교 교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.

④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, 연구원,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. 이 경우, 임용기간, 보수,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.

⑤ 총장은 단장의 요청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, 연구원, 조교로 하여금 본교의 교육·연구 및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## 제3장 운영위원회

**제11조** (구성) ①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.

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12조**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산학협력의 기획 조정
2. 산학협력단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3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
4. 시행을 위한 세칙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5. 산학협력단 산하 센터 및 부속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<신설 2014.01.07.>
6.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13조** 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**제14조** (소집 및 의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4장 재산 및 회계

**제15조** (운영재원)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17조에 의한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.

**제16조** (수입)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, 산학협력에 관한 기부금품 <개정 2014.01.07.>
3. 산학협력 계약에 의한 수입금
4.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
5. 이자수입
6.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과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
7. 산하 센터 및 부속기관의 간접경비 등 수익금 <개정 2014.01.07.>
8.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

**제17조** (지출)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.

1. 산학협력단의 관리·운영비
2.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
3. 본교 시설 및 운영의 지원
4.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
5.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
6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
7.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
8.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경비

**제18조** (재산관리의 제한) 단장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동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기본 재산의 양도, 증여, 임대, 교환, 포기
2. 예산외 채무의 부담
3. 채권의 포기
4. 기타 재산의 관리 및 처분

**제19조** (회계 관리)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

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.

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.

**제20조** (회계기관)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.

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두며,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단장의 요청에 따라 본교 회계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.

**제21조** (지출방법)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이 행한다.

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. 다만, 업무추진비, 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.

**제22조** (회계연도)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**제23조** (예·결산서 제출) 산학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예·결산 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보 칙

**제24조** (정관의 변경)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본교의 규정 변경 절차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01.07.>

**제25조** (해산)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.

**제26조** (잔여재산의 귀속)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.

**제27조** (시행세칙)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
**제28조** (공고)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서울 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국민일보에 게재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** (시행일) 본 정관은 관할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 (경과조치) 산학협력단 설립 이전에 본교와 체결된 산학협력 계약상의 권리·의무는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4년 01월 07일부터 시행한다.